
2017년 1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7. 8.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7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8.23.(수) 10:00 ~ 11:40
-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김진호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
 - (2017-38)00택시(주) 소속 전체 택시 차량번호(일반택시, 외국인관광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심야택시 등)
 - (2017-39)서울 내 모든 개인, 법인택시 현황(개인택시 택시번호, 법인택시 택시번호, 법인명, 법인연락처)
 - (2017-40)최근 15년간 연합뉴스에 투입된 예산(전재료 및 기타수입 전체예산, 연도별, 용도별 예산)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인용
 - 인용

【 의안번호 2017-38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00택시(주) 소속 전체 택시 차량번호(일반택시, 외국인관광택시, 고급 택시, 태형택시, 심야택시 등)

【 의안번호 2017-39 직권심의 】

안건명 : 서울 내 모든 개인, 법인 택시 현황(개인택시 택시번호, 법인택시 택시번호, 법인명, 법인연락처)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김지미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권혜진 위원님, 송시강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주심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위원 7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안전 중에 38호 이의신청 건과 39호 직권심의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라고요. 그래서 동종안전인 의안번호 제2017-38호 택시물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과 제39호 직권심의회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택시물류과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38호, 39호 택시물류과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제2017-37호 이의신청 건과 제2017-39호 직권심의회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2017-38호 택시물류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00택시(주) 소속 전체 택시의 차량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취득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회사 비밀 및 영업상 지위가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

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전번호 제2017-39호 직권심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서울 내 모든 개인택시의 택시번호, 법인택시의 택시번호, 법인명, 법인연락처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는 공개 시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일단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신청인이 금년도 초에도 비슷한 건인 00 택시의 법인택시 대수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회 심의 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회사 관련하여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알권리가 목적이 아닌 회사를 흠집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방금 간사가 낭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은 없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 ○○○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공개하신 이유가 7호 인데요,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이 00 택시회사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어떻게 해한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 주무관>

○ 일단 제3자의 의견을 받아본 것처럼 법인의 모든 차량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악의적으로 회사 내의 직원들을 선동한다거나 외부적으로 안 좋은 기사를 흘려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경영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 위원>

○ 악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일단 추측에 불과하고, 회사 관점에서 00 택시에서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업상 이익을 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번호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까?

<○○○ 주무관>

○ 차량번호를 가지고 같은 동료들한테 악의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 위원>

○ 택시번호를 가지고 어떤 흠집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안 떠오릅니다.

〈○○○ 주무관〉

- 택시번호하고 회사번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것을 회사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트린다거나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위원〉

- 만약에 그럴 생각이면 사실은 길거리에 나가서 00택시의 번호를 봐도 됩니다. 이런 식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00택시 측이나 택시물류과의 추정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3자인 회사의 의견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에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실질적으로 청구인이가 진짜 본인의 알권리로 했느냐,

〈○○○ 위원〉

- 그것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추측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작년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보면 알권리가 아닌 회사의 이런 악의적인 목적의 청구는,

〈○○○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그 건은 이 사건 내용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그 판례를 여기에 적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일단 저희 입장은 제3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이런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알권리라고 보기에 어렵고, 경영상의 침해도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

- 만일 청구인이 00택시의 차량번호와 그 차량번호별로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한다면 공개를 하셔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 주무관>

- 유가보조금과 관련되어 있으면 공개해야 된다고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 위원>

- 이미 여러 건 그렇게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자료는 그것보다 작은 범위의 자료인 것이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도 안 들어간 차량번호만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자세한 자료는 공개할 수 있고 차량번호만 있으면 공개가 될 수 없는 겁니까?

<○○○ 주무관>

-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이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 위원>

- 그러면 청구인한테 유가보조금을 차량번호와 같이 신청하면 공개될 수 있다라고 안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기존 선례를 봐서 판단을 또 하겠습니다.

<○○○ 위원>

- 다른 업체에서는 서로 경쟁업체의 차량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까? 협회에서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차량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 위원>

- 등록된 차번호는 알 수 없다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공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 운수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업체에서는 서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공개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것을 보고 해 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 위원>

- 그러면 차량번호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유형,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냐, 관광택시냐, 대형택시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문제인 겁니까?
- 제가 보기에는 차량번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업유형에 관한 정보는 경영상 정보라고 볼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취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량번호가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본인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차량을 보면 어차피 운수회사하고 차량번호는 같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청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는 조금,

<○○○ 위원>

- 만약 개인차량이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택시면허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체에서 등록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전혀 불순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업체 입장에서도 이것을 경영상 정보다, 비밀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그에 비해서 이것이 고급택시냐, 일반택시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 저 업체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A와 B로 구분을 한다면 B는 주무관님이 말씀하시는 영업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설득력이 있습니다.
- 그에 비해서 그냥 차량 등록되어 있는 그 번호 자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마 택시쪽 협회를 통해서 최소한 차량번호 정도는 업체들끼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 주무관>

○ 일부 공감은 됩니다.

<○○○ 위원>

○ 그런데 차량번호를 보면 차량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까? 차량번호를 통해서는 대형이나 일반, 고급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됩니까?

<○○○ 주무관>

○ 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안다면 그 내용 자체가 또 의미가 있으니까,

<○○○ 위원>

○ 법인택시면 차량번호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차량 일련번호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잘 모릅니다.

<○○○ 위원>

○ 우리가 검색을 해 보면 그런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시내에 주행하고 있는 택시들의 차량번호는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차량번호 정보를 취득하고 자

료화시키는지의 문제이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차 나오는 것을 다 적어서 알 수 있잖아요.

<○○○ 주무관>

○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냥 차고지에 가서 본인이 직접 적는데, 그것도 문제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위원>

○ 그것이 뭐 문제가 될까요?

<○○○ 위원>

○ 여기 차번호 중에 30 몇 번으로 시작되는데 밑에 3개는 70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 주무관>

○ 번호별로 고급, 모범, 대형이 나뉩니다.

<○○○ 위원>

○ 그러면 최대한 양보하면 앞에 두 자리는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이네요?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택시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 위원>

- 다른 택시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00 택시의 일반택시하고 고급택시나 대형택시의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주무관>

- 그것보다 약간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대형택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이것이 상한선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주무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몇 대를 두는지는 회사의 자율입니까?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간사>

- 이 정보를 우리시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상 반드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까? 이 00택시 전체 차량현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산한 정보입니까?

<○○○ 주무관>

- 그것은 시에서 택시면허 허가를 내드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사>

- 이 차량번호를 알아서 경영 및 영업상 지위가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보의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영업방해라서 형사처벌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형사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보를 취득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원론적으로 따지면 모든 정보는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청구인과 업체와의 관계를 공개여부 판단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비공개 주 이유가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회사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이 예상 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은 사실은 비공개 사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단 38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차량번호 자체가 이 택시회사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이 회사에 어떠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 그리고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비율 자체가 굉장히 소수로 대형은 3대밖에 되지 않고 고급택시라고 해도 사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대형이나 고급택시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체가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 안건 38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인용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 전체공개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도 공개에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는 부분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는 제공을 하고요, 이 사업의 유형에 관한 정보는 경영상 비밀로서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에서 3명이 38호 안건에 대해서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38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39호 소관안전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진행을 해 주시죠.

<○○○ 위원>

○ 이 건에서는 개인택시의 택시번호도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역시 유류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이 됩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다 됩니다.

<○○○ 위원>

○ 지금 청구내용을 ‘서울, 경기도 내에 모든 개인·법인택시 번호 현황인데, 일

단 경기도 것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청구내용이 ‘참조문서에 엑셀양식과 같이 요청한다.’ 첨부된 엑셀파일 형태로 메일통보해 달라는 것인데, 정보를 따로 생산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이런 식의 엑셀파일로 된 정보가 있지는 않은 것이죠?

<○○○ 주무관>

○ 그렇죠. 저희들이 청구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드리는 것이죠.

<○○○ 위원>

○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 위원>

○ 그것이 판단하시기에 공개해도 될 정보다라고 하면 따로 만들어서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무관>

○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 딱 이 정보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엑셀파일이 있기는 합니까?

<○○○ 주무관>

○ 시스템에서 추출을 하거나 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 위원>

○ 지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조합해서 달라고 해서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시내에 개인·법인택시 번호 현황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 논리적으로 보면 38호를 제공해 주면 39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것과 별개로 볼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 요청한 서식대로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업체별로 쪽 다 줘야 되는 것이죠. 서울시가 택시회사가 몇 개입니까?

<○○○ 주무관>

○ 법인택시는 255개입니다.

<○○○ 위원>

○ 255개를 쪽 뽑아 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죠.

<○○○ 위원>

○ 신청인이 동일인입니까? 앞에 안전하고 다릅니까?

<○○○ 위원>

○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개인택시는 왜 요구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주무관>

○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비공개 사항이 아니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필요한 지 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

○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소유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번호만 주면 되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청구내용은 번호만입니다. 이것이 개인택시인지 법인택시인지 구분하고, 개인택시의 번호만 주면 되는 것이죠.

<간사>

- 이 번호를 가져가서 무슨 유효성이 있는지 아무리 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 차량번호로 차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정보를 또 추가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개인택시도 어차피 대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 주무관>

- 네, 있습니다.

<○○○ 위원>

-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번호를 불러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법인 255개와 개인택시 파일 하나면 256개가 되겠네요.

<○○○ 주무관>

- 개인택시는 한 사람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 4만 9천 명 가까이 됩니다.

<○○○ 위원>

- 문건이요.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번호만 모아서 관리하는 대장은 있지 않겠습

니까?

<○○○ 주무관>

○ 저희들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위원>

○ 쪽 뽑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파일로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문건만 하게 된다면 법인업체 255개와 개인택시 합해서 전체 256개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대신에 수수료를 적정하게 반드시 징수를 하셔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간사>

○ 그러면 이것이 몇 만 건 되는 것이죠?

<○○○ 주무관>

○ 개인택시가 4만 9천 명입니다. 법인하고 합해서 7만 건입니다.

<간사>

○ 정보 컬럼이 7만 개가 넘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 봐야죠. 이것을 출력물로 줘니까?

<○○○ 주무관>

- 전자파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수수료는 용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네요.

<○○○ 위원>

- 혹시 이 전체 택시번호를 기반으로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제가 봐도 큰 활용도가 없습니다. 다시 신규면허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신규면허는 없는 사항이고, 단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사람이 악의적인, 그리고 알권리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간사>

- 알권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알권리의 여부는 본인은 알권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알권리죠.

<○○○ 위원>

- 그냥 알고 싶다고 해도 알권리죠.

<○○○ 위원>

- 일단 이 양식대로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게 된다면 보유하는 형태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품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청구취지에 맞게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내용 중 경기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서울시 내 모든 개인·법인택시 번호 현황이기 때문에 개인·법인만 구분해서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

- ○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 위원>

- 38호 결정에 근거해서 비슷한 맥락이고, 39호는 전체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법인연락처는 빼고 주자는 말씀이시죠?

<○○○ 위원>

- 그렇죠.

<○○○ 위원>

-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에 구속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인연락처가 청구취지에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니까 개인택시를 전체 하나의 묶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는 법인명에 따라서 파일로 추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 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하신 것이죠?

<○○○ 위원>

○ 네.

<○○○ 주무관>

○ 법인연락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될 소지가 혹시 있는지.

<○○○ 위원>

○ 청구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 위원>

○ 인터넷 쳐보면 전화번호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다 나옵니다.

<○○○ 위원>

○ 필요하면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되니까요.

<○○○ 위원>

○ 그러면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에 4명이 39호 안건은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7-39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7-40 직권심의 】

안건명 : 최근 15년간 연합뉴스에 투입된 예산(전재료 및 기타수입 전체예산, 연도별, 용도별 예산)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40호 언론담당관 소관 직권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인터넷뉴스팀장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40호 언론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40호 언론담당관 소관 직권심의 건입니다. 청구인은 최근 15년간 연합뉴스에 투입된 전재료 및 기타수입 등 전체예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연합뉴스의 주요 영업기밀로서 공개될 경우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며, 향후 연합뉴스의 수수료를 포함한 영업정책 수립 및 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심의회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팀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안녕하세요? 뉴스 통신사가 뉴시스도 있고 연합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서울시가 연합통신사 외에 다른 뉴스 통신사와 계약을 해서 제공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 팀장>

- 지금 뉴시스, 뉴스1이 있습니다.

<○○○ 위원>

- 그럼 뉴시스, 뉴스1과도 같이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럼 뉴스1와 뉴시스의 경우에도 연합뉴스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뉴스를 제공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터넷 검색페이지에 배너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 팀장>

○ 네, 비슷한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고, 배너광고는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하게 뉴스 전재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연합뉴스가 좀 독특한 것이네요?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니까 단순 뉴스를 제공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홍보가 가능한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팀장>

○ 네.

<○○○ 위원>

- 서울시 입장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우려하셨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 팀장>

- 일단 연합뉴스 쪽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고,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동일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순수하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팀장>

-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일단 연합뉴스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다른 종이신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간신문사 정기 구독하고 있죠?

<○○○ 팀장>

- 네.

<○○○ 위원>

- 만약에 지금 정기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의 종류와 계약금액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하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 팀장〉

- 시의원 요구자료로 매번 나오고 있는데, 시의원님들한테는 시정과 관련되니까 저희가 다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 위원〉

-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정부기관에 어떠한 거래가 발생했고 예산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팀장〉

- 그런데 기사 경우에는 활자로 나가기 때문에 원가개념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지면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면, 운전기, 기타 등등 원가산정이 가능하겠지만 속보를 위주로 하고 있는 통신은 그 통신사의 영향력과 기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쪽에서는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은 구매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연합뉴스의 그 계약조건을 다 밝히려는 것도 아니라 연합뉴스에 제공된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려는 것이어서 원가정보도 드러나지 않고, 또 당연히 정부예산의 지출에 관한 것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계약서나 계약조건을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냥 연합뉴스에 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15년치를 청구한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금액만을 제공하는 것은 연합뉴스의 어떤 영업상 비밀도 크게 해하는 바는 없어 보이고, 서울시 입장에서 그

것을 제공하지 아니해서 괜한 오해를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팀장>

- 담당팀장 입장에서 연합뉴스 쪽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감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 혹시 정산개념이 있습니까? 연간 2억인데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지급 하는 겁니까?

<○○○ 팀장>

- 월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사 송구 건수로 보면 뉴시스, 뉴스1 합친 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칫 전재료 갈등이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 제공되는 콘텐츠는 거의 비슷합니까?

<○○○ 팀장>

-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은 우리시가 내는 보도자료는 다 기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로 하는데 아무래도 뉴스1이랑 뉴시스가 신생언론사 다 보니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시에 관한 기사를 송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것을 연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렇죠.

<○○○ 위원>

- 그러면 연합 입장에서는 공개될 경우에 내년 계약에서 다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 팀장>

- 지금껏 계속 전재료를 다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 왔으나,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요청이 없었고, 다만 뉴시스하고 뉴스1 쪽에서는 연합뉴스 수준으로 올려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원가 산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비추어본다면 우리가 불리하게 계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된다면 나중에 원가 산정 이런 것도 투명하게 산정되는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렇죠. 실제로 언론재단에서 포털하고 언론사와 계약을 맺었을 때 기사 한 건당 가치가 얼마냐. 사무실 운영비용, 기자 인건비, 기타 등등 다 따져서 원가산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핸드폰과 달리 정치적,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봤을 때 사회적 파장에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 기사의 값어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

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연합뉴스나 통신사 쪽에서 서울시정에 관련돼서 비판기사를 써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서울시가 공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 팀장>

-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이미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위원>

- 이것이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 팀장>

-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연합뉴스 쪽에서 공식적으로 비공개 요청을 해 왔으니까 비공개를 한 겁니다.

<○○○ 위원>

- 용도별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 팀장>

- 용도별 예산은 계약내용을 공개하라는 얘기죠.

<○○○ 위원>

- 그런데 협약내용을 보면 연 2억은 협약내용인데 이것이 용도로 나누어서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용도별 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팀장>

○ 맞습니다.

<○○○ 위원>

○ 협약서 내용을 보면 뉴스 아이디어들을 제공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아이디어를 사용합니까?

<○○○ 팀장>

○ 실제 쓰는 부서도 쓰지 않는 부서도 있는데, 우리 행정포털 행정망에 들어가면 속보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 뉴스 아이디어를 치고 들어가면 인물검색, 프리미엄뉴스, 시정 관련해서 섹터가 나뉘어져 있고, 시정 관련된 내용을 굳이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문자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 약간 서비스 차이가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 팀장>

○ 그렇죠.

〈○○○ 위원〉

-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종합일간지의 경우에 2013년과 2014년 이렇게 연합뉴스 월 전재료가 낮아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재료가 낮아진 적은 없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개됨으로써 과다 지급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팀장〉

- 그렇죠. 그러면 연합뉴스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해당팀장 입장에서는 연합뉴스를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시와 우호적인 홍보채널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단위가 세세하게 공개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공개로 인해서 통신사 간에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연합뉴스는 아무래도 뉴스진흥법에 따른 국가기간 통신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 위원〉

- 부분공개는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연단위 금액 정도로 이렇게 부분공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 팀장〉

- 연단위로 공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시 대변인실 예산을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구인이 조금만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문서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연간자료를 연단위로 총괄금액 정도로는 정보공개가 가능합니까?

<○○○ 팀장>

○ 네, 지금 자료 다 있으니까요.

<○○○ 위원>

○ 부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팀장>

○ 그리고 저희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월 통신 전재료 결제를 할 때도 금액만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유추를 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 위원>

○ 그렇겠네요.

<○○○ 팀장>

○ 네, 그런데 연합뉴스 쪽에서 공문까지 제출하면서 수차례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공개할 경우 서로 좀 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 연합뉴스와 관련된 예산이 전재료 말고 또 있습니까?

<○○○ 팀장>

○ 따로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협약서 금액밖에 없는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래서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년치이고, 그 몇 년치에 투입된 예산의 총액, 그리고 이것 외에 더 없다. 그렇게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 위원〉

○ 그 정도는 가능합니까?

〈○○○ 팀장〉

○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맞고요.

〈○○○ 위원〉

○ 일단 용도별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치 예산 중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 외에는 마찬가지로 아예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산 총액을 가지고 있는 연도별로만 제시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별 예산은 아예 예산이 구분되어서 잡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존재 하는 것 같고요, 연도별 예산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전체예산하고 연도별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 팀장>

○ 최근 5개년치는 갖고 있고요, 그 전 것도 아마 찾아보면,

<○○○ 위원>

○ 부존재인 것은 아닌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저는 그것이 연도별이건 용도별이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총액입니까? 아니면 연간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 팀장>

○ 연간입니다.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것도 연간 얼마 얼마를 요청했습니다.

<○○○ 위원>

- ○○○ 위원님은 용도별 예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 위원>

- 굳이 '용도별 자료는 없을 테니 그것은 빼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다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내용은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이것이 지금 연도별 예산과 용도별 예산으로 나누어서 청구를 한 사안이어서, 결국 연도별 예산 총액은 공개네요. 없는 것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결정해야 하니까 공개인 것이죠.
- 그러면 결국은 네 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에 4명이 직권심의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40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이것으로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